

21. 국민연금기금

1. 기금개요

설치근거	국민연금법 제101조		
설치년도	1987년	운용개시년도	1988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금관리주체	보건복지부
관리방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갈수록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국민연금사업은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낮아질 위험에 처할 때 그 납부이력을 근거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러한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되었다. 1986년 공포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담 운용기관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본 기금의 적립금은 시작하던 해인 1988년 말 5천억원 규모였으나, 2020년 12월에는 833.7조원에 이르러 일본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 본 기금에서는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운영사업, 국민연금복지사업, 국민연금징수업무위탁사업,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사업 및 국민연금공단사옥확보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다.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국민연금사업 및 사업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기금이 운용하는 개별사업들은 국민연금제도를 원활히 지속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연금법」상의 운용대상사업이나 공단의 업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부터 수급까지 길게는 30~40년이 소요되어 보험료 납부시기와 급여수급시기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고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급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 기금의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설치 목적과 운용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인정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개별사업의 적정성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에서 운용하는 단위사업은 크게 기금운영비사업,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사업,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 국민연금공단사옥확보사업, 국민연금제도운영사업, 국민연금복지사업, 국민연금징수업무위탁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용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됨.

- 2020년 신규사업으로 본 기금에 편입된 사업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들도 기금에서 운용할 목적은 유효하다고 평가함.
 -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사업은 기금규모의 증가 및 투자 다변화에 따른 우수인력 유치 및 유지, 해외투자 역량 강화 등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공단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작된 사업임.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법」 제25조제8호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공단의 업무와 동법에서 신설된 제27조의3 기금운용 인력 양성조항에 의해 법적으로 명시된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임. 법에 명시된 공단 업무이며,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사업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실 설치 및 운영, 상근전문위원 등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가 명시된바 이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음.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사업이 내부 인력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은 외부 전문가를 상근적으로 고용하거나 외부위원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임. 따라서 두 사업이 각각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사업 설치목적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 이 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등의 세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해당 사업들은 기존 사업을 단순 분리·편성한 사업임.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에서 운용하는 기금운영비사업,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사업, 국민연금 급여지급사업, 국민연금공단사옥확보사업, 국민연금제도운영사업, 국민연금복지사업, 국민연금징수업무위탁사업은 기금에서 주체가 되어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함.
- 2020년 신규사업으로 본 기금에 편입된 사업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사업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사업도 공단과 기금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공단 고유 업무로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환하여 수행하거나 별도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에서 운용하는 기금운영비사업,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사업, 국민연금 급여지급사업, 국민연금공단사옥확보사업, 국민연금제도운영사업, 국민연금복지사업, 국민연금징수업무위탁사업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고유의 사업이므로 여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은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고용보험 기금이나 일반회계의 실업자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과 목적상 유사점은 있음. 그럼에도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 보험료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제한되어 있어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 예산사업들과의 차별성이 인정됨.
- 2020년 신규사업으로 본 기금에 편입된 사업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사업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사업도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중복될 우려는 없다고 평가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명확함. 또한, 갈수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의 목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대상이 국민연금사업과 직결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타 기금과의 유사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